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. 12. 1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11. 14. 마포구청장
나. 회부일자: 2025. 11. 18.
다. 상정일자: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(2025. 12. 1.)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행정지원과장 양성우】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의 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 및 경조사 휴가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육아시간 사용일의 시간외근무 허용(안 제24조제14항)
 -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(안 별표 3)

다. 참고사항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규정」

- 입법예고: 2025. 10. 10.~10. 30. 결과: 의견 없음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① 조례의 개정 취지

-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의 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 및 경조사 휴가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② 주요 개정내용

- 주요 내용

구 분	현 행	개정안
제24조 제14항	육아시간 사용일 시간외근무 명령 불가	육아시간 사용일 시간외근무 명령 가능
별표3	경조사별 휴가일수표 ▶ 배우자 출산휴가: 1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 5일)	경조사별 휴가일수표 ▶ 배우자 출산휴가: 2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 5일)

- 기대 효과

-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법적 근거와 대상이 상이하므로, 이를 구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 보호 및 행정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종합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한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 및 경조사 휴가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 목적의 최소 개정으로, 법적 타당성과 행정적 필요성이 모두 인정됨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론요지: 없 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8. 기타: 없 음